

관리번호	-
------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한 내 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전자우편 주소	
	④ 주소				⑤ 피상속인과의 관계	
	⑥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사후관리위반신고	
피상속인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⑩ 주소					
	⑪ 상속원인 [] 사망 [] 실종 [] 인정사망 [] 기타				⑫ 상속개시일	
세무대리인	⑬ 성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관리번호	
	⑯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⑰ 상속세과세가액			영리법인 면제	유증등재산가액	
⑱ 상속공제액				면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⑲ 감정평가수수료				⑳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⑳ 과세표준 (⑰ - ⑱ - ⑲)				㉑ 공제·면제 후 납부할 세액 (㉔ + ㉕ - ㉖ - ㉗ - ㉘)	
				㉒ 가업상속 납부유예 세액	
㉓ 세율				㉔ 신고불성실가산세	
				㉕ 납부지연가산세	
㉖ 산출세액				㉗ 납부할 세액(합계액) (㉑ - ㉒ + ㉓ + ㉔)	
㉘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납부방법	납부·신청일자
㉙ 산출세액 (㉖ + ㉘)				㉚ 연부연납	
㉛ 이자상당액				㉜ 물납	
㉝ 문화재등징수유예세액				현금	㉞ 분납
					㉟ 신고납부
㊱ 계 (㉙ + ㉚ + ㉛ + ㉜ + ㉝)					
㉞ 증여세액공제	소계 (㉙ + ㉚)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㉟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㊲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㊳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㊴ 단기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㊵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㊶ 그 밖의 공제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4.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5.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② 주민등록번호" 및 "⑧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⑨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 "⑤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로 적습니다.
- "⑪ 상속원인"란: 사망, 실종, 인정사망, 기타 중 ☒ 표시합니다.
- "⑫ 상속개시일"란: "⑪ 상속원인"이 실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그 외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적습니다.
- "⑬ 성명"부터 "⑯ 전화번호"란까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 "⑰ 상속세과세가액"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㉔ 상속세과세가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⑱ 상속공제액"란: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㉕ 상속공제금액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㉑ 세율", "㉒ 산출세액"란: 상속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㉓ 세대생략가산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㉕ 이자상당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9항 및 제18조의3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㉗ 증여세액공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액공제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 "㉙ 면제분 납부세액"란: 상속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영리법인의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 "유증 등 재산가액"란: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 "면제세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그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가액에 대하여 면제받은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 "㉛ 기업상속 납부유예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에 따라 「기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별지 제12호의2서식)」를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 "㉝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㉞ 납부지연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 "㉟ 연부연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별지 제11호의2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㊱ 물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물납(변경, 철회)신청서(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문화재 등 물납(철회)신청서(별지 제14호의2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㊳ 분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㊵ 신고납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관리번호	-
------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① 재산구분 코드	② 재산종류 코드	③ 소재지 · 법인명 등		④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분)	⑤ 수량 (면적)	⑥ 단가	⑦ 평가가액	⑧ 평가 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⑨ 계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총상속재산 가액	⑩ 상속 재산 가액	
	⑪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⑫ 합 계	
비과세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⑬ 계	
	⑭ 금 양 (禁 養) 임 야 등 가 액 (「 민 법 」 제 1 0 0 8 조 의 3)	
	⑮ 공 공 단 체 유 증 재 산 가 액	
	⑯ 기 타	
과세가액 불산입액	⑰ 계	
	⑱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㉑ 공익신탁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㉒ 기 타	
공제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㉓ 계	
	㉔ 공 과 금	
	㉕ 장 레 비 용	
	㉖ 채 무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㉗ 계 (㉔ + ㉕ 또는 ㉔ + ㉖)	
	㉘ 「 상 속 세 및 증 여 세 법 」 제 1 3 조	
	㉙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 제 3 0 조 의 5	
	㉚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 제 3 0 조 의 6	
㉛ 상 속 세 과 세 가 액 [㉔ - (㉘ + ㉙ + ㉚) + ㉗]		

작성방법

1. "①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상속재산 (상속인)	상속재산 (상속인 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외)	증여재산가산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산 (가업승계)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비과세재산 (공공단체 유증)	비과세재산 (기타)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재산)
코드	A11	A12	A13	A21	A22	A23	A24	B11	B12	B13	B21	B22

2. "②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 I (순수토지)	토지 II [일반건물(07) 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01~11 유형, 13 유형 제외)	가상자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3. "③ 소재지·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고, 주택(공동, 개별주택)의 경우 동, 호수를 같이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주)○○건설)을 적습니다.
4. "④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지분)"란 : "②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계좌번호를, 부동산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지분을 각각 적습니다.
5. "⑧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유사재산의 매매거래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6. "⑩ 상속재산가액"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㉖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㉗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을 적습니다.
7. "⑪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처분재산·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다. 추정상속재산가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㉒ 공과금"란부터 "㉔ 채무"란까지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각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9. "㉗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란에는 증여 당시의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관리번호	-
------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① 피상속인과의 관 계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⑤ 법 정 상 속 지 분 율	⑥ 법 정 상 속 재 산 가 액	⑦ 실 제 상 속 지 분 율	⑧ 실 제 상 속 재 산 가 액

나.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

⑨ 재산구분 코 드	⑩ 재산종류 코 드	⑪ 소 재 지 · 법인명 등		⑫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분)	⑬ 수 량 (면 적)	⑭ 단 가	⑮ 평가가액	⑯ 평 가 기 준 코 드
		국 외 자 산 여 부	국외재산 국 가 명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계	⑰ 상 속 재 산 가 액			
	⑱ 상 속 개 시 전 처 분 재 산 등 산 입 액			
	비 과 세 재 산 가 액	⑲ 금 양 임 야 등 가 액		
		⑳ 공 공 단 체 유 증 재 산 가 액		
		㉑ 기 타		
	과 세 가 액 불 산 입 액	㉒ 공 익 법 인 출 연 재 산 가 액		
		㉓ 공 익 신 탁 재 산 가 액		
		㉔ 기 타		
	가 산 하 는 증 여 재 산 가 액	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㉖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㉗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㉘ 합 계				

작성방법

1. "①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 "자"로 표기합니다.)
2. "⑤ 법정상속지분율"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총 상속지분으로 나눈 비율(해당 상속인 지분 ÷ 총상속지분)을 적습니다.
3. "⑥ 법정상속재산가액"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㉔ 총상속재산가액 합계액" 및 "㉕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과 같은 서식의 "㉓ 비과세 재산가액 계", "㉒ 공과금" 및 "㉑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앞쪽의 "⑤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⑦ 실제상속지분율"란: 해당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가액("⑧ 실제상속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5. "⑧ 실제상속재산가액"란: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해당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을 적고 협의분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 "⑨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상속재산 (상속인)	상속재산 (상속인 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외)	증여재산가산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산 (가업승계)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비과세재산 (공공단체 유증)	비과세재산 (기타)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재산)
코드	A11	A12	A13	A21	A22	A23	A24	B11	B12	B13	B21	B22

7. "⑩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 I (순수토지)	토지 II [일반건물(07) 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01~11 유형, 13 유형 제외)	가상자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8. "⑪ 소재지·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 가. 소재지를 적을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습니다.
- 나.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9. "⑫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지분)"란: "⑩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계좌번호를,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의 실제 상속지분(예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50% 지분을 상속인 5명이 각각 5분의1씩 상속받은 경우 10%로 적음)을 각각 적습니다.
10. "⑬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유사재산의 매매거래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관리번호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가. 채무**

① 채무종류	② 차입기간		채권자			⑥ 금액
	발생 연월일	종료(예정) 연월일	③ 성 명 (상 호)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소재지)	
⑦ 계						

나. 공과금

⑧ 공과금종류코드	⑨ 연도별	⑩ 분기별	⑪ 금액
⑫ 계			

다. 장례비용

지급처		⑮ 지급내역	⑯ 금액
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⑭ 성명(상호)		
⑰ 계			

라. 상속공제

기 초 공 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⑮ 기 초 공 제	
	⑯ 자 녀 공 제	
	⑰ 미 성 년 자 공 제	
	⑱ 연 로 자 공 제	
	㉑ 장 애 인 공 제	
㉓ 일 팔 공 제		
추 가 상 속 공 제	㉔ 가 업 상 속 공 제	
	㉕ 영 농 상 속 공 제	
㉖ 배 우 자 상 속 공 제		
㉗ 금 융 재 산 상 속 공 제		
㉘ 재 해 손 실 공 제		
㉙ 동 거 주 택 상 속 공 제		
㉚ 공 제 적 용 한 도 액		
㉛ 상 속 공 제 금 액 합 계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채무부담 및 공과금·장례비·감정평가수수료 지급 입증서류

작성방법

1. 채무와 공과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적습니다.
2. "① 채무종류"란 : 금융채무, 개인사채, 상가 임대보증금 등 채무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⑧ 공과금종류코드"란 : 아래의 공과금종류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과금종류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과태료/범칙금	회비	기타
코드	01	02	03	04	05	06

4. "㉖ 배우자상속공제"란 : 배우자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2)의 "㉕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①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②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공과금	
③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 재산가액	
④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①-②-③)	

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세및증여세 법 시행령」 제17 조)	⑤ 총 상속재산가액	
	⑥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⑦ 공과금 및 채무	
	⑧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⑨ 상속재산의 가액(⑤-⑥-⑦-⑧)	
⑩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⑪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⑫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⑬ 상속 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⑭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⑨-⑩+⑪) \times ⑫] - ⑬\}$ (다만,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억원)		

다.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⑮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④와 ⑭ 중 적은금액)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5억원)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협의분할서, 기타 분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작성방법

- "⑤ 총 상속재산가액"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⑫ 총상속재산가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⑥ 비과세되는 상속재산"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⑬ 비과세재산가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⑦ 공과금 및 채무"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㉑ 공제금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⑧ 과세가액 불산입재산"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⑰ 과세가액 불산입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⑫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란은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적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함)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가. 처분재산(인출금액) 명세							
① 재산 구분	② 처분(인출) 금액 합계	③ ②금액 1년 이내 2억 이상 여부 (2년 이내 5억 이상)	④ 소명금액 합계	⑤ 미소명금액 합계	⑥ 차감가액 [(②)×20%, 2억원) 중 작은 금액]	⑦ 상속추정여부 (⑤ > ⑥)	⑧ 추정상속재산가액 (⑤ - ⑥)
01.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여 []부				[]여 []부	
02.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여 []부				[]여 []부	
03.기타재산 (위 재산 제외)		[]여 []부				[]여 []부	
⑨ 계							

나. 부담채무 명세							
⑩ 재산 구분	⑪ 차입금액 합계	⑫ ⑪금액 1년 이내 2억 이상 여부 (2년 이내 5억 이상)	⑬ 소명금액 합계	⑭ 미소명금액 합계	⑮ 차감가액 [(⑪)×20%, 2억원) 중 작은 금액]	⑯ 상속추정여부 (⑭ > ⑮)	⑰ 상속추정재산가액 (⑭ - ⑮)
부담채무 I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여 []부				[]여 []부	
부담채무 II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						[]여 []부	
⑱ 계							

다. 추정상속재산가액 합계액(⑨ + ⑱) : 원

작성방법

1. "② 처분(인출) 금액 합계", "④ 소명금액 합계", "⑤ 미소명금액 합계" 란은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을)[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을)]의 "가.처분재산 및 인출내역 사용명세내역" 합계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2. "⑪ 차입 금액 합계", "⑬ 소명금액 합계", "⑭ 미소명금액 합계" 란은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을)[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을)]의 "부담채무 상세내역" 합계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앞쪽)

가. 처분재산 및 인출내역 사용명세내역

[illegible]

나. 부담채무 상세내역

[illegible]

신고인 제출서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작성방법

1. "①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재산 (01, 02 제외)
코드	01	02	03

2. "② 재산소재지"란은 처분재산(인출내역)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금융재산인 경우 계좌번호,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를 각각 적고, 그 외 기타재산의 경우에는 처분재산 상세내역을 적습니다.

3. "⑧ 소명증빙" 또는 "㉔ 소명증빙"란은 사용처를 실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확인서, 금융증빙 등을 적습니다.

4. "⑨ 거래상대방" 또는 "㉕ 거래상대방"란 중 "관계"는 피상속인과 거래상대방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시 : 형제자매, 특수관계법인, 무관계 등)

5. "⑪ 금융기관등 차입여부"란은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차입하였는지에 여부에 따라 ✓ 표시하고, "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채무 합계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2년 이내 5억 이상)에 해당할 때 사용처란을 작성합니다. "부"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기간 및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채권자 등 관련 내용을 작성합니다.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 상속세 면제대상 영리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
④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가액 (유증 등 재산가액)	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 (면제세액)	⑥ (④ ×10%)

나. 상속세 납부 대상자

⑦ 구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지분율	⑪ 면제분 납부세액 [(⑤-⑥)×⑩]
계				

작성방법

- 이 명세서는 상속세 면제대상 영리법인별로 작성합니다.
- "④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가액"란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및 유증에 따라 영리법인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 "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면제세액)"란은 ④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비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 "⑦ 구분"란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⑩ 지분율"란은 상속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비율을 적습니다.
- "⑪ 면제분 납부세액"란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⑤) - {영리법인이 유증 등 취득한 상속재산가액(④) × 1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주식등의 비율(⑩)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③ 주 소				전자우편주소	
피상속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상속공제의 종류				⑧ 상속일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

⑨ 종류	⑩ 소재지	⑪ 수량 (면적,톤수)	⑫ 단 가	⑬ 가 액
계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

⑭ 상호	⑮ 사업자등록번호	⑯ 주식수	⑰ 1주당 가액 등	⑱ 가 액
계				

⑲ 사후관리 위반유형코드

3.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⑳ 가업상속 공제금액		㉓ 영농상속 공제금액	
㉑ 추징율		㉔ 영농상속받은 재산 중 처분재산가액	
㉒ 금액(㉑ × ㉑)		㉕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㉖ 금액(㉓ × (㉔/㉕))	

4.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㉗ 상속세액	㉘ 상속세액

5. 이자상당액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㉙ 일수	㉚ 일수
㉛ 이자율	㉜ 이자율
㉝ 이자상당액 (㉗ × ㉙ × ㉛/365)	㉞ 이자상당액 (㉘ × ㉚ × ㉜/365)

6. 납부할 세액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㉟ 납부할 세액(㉗ + ㉝)	㊱ 납부할 세액(㉘ + ㉞)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3항(제16조제12항)에 따라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과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가업 및 영농 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재산을 적습니다.
2. "㉑ 사후관리 위반유형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후관리 위반유형	코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	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에 해당	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제3호에 해당	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 해당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나목에 해당	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에 해당	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4항제1호에 해당	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	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에 해당	09

3. "㉒ 추정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5항에 따른 추정율(100%)을 적습니다.
4. "㉓ 및 ㉔ 상속세"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5. "㉕ 및 ㉖ 일수"란에는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18조의3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6. "㉗ 및 ㉘ 이자율"란에는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습니다.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③ 주 소				전자우편주소	
피상속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상속일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재산명세

⑧ 종류	⑨ 소재지	⑩ 수량 (면적,톤수)	⑪ 단 가	⑫ 가 액
계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재산명세

⑬ 상호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주식수	⑯ 1주당 가액 등	⑰ 가 액
계				

⑱ 추징사유 유형 코드	
--------------	--

3.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액

⑲ 가업상속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	
⑳ 처분비율(또는 감소한 지분을 ÷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㉑ 추징되는 상속세(⑲ × ㉑)	

4. 이자상당액

㉒ 일수	
㉓ 이자율	
㉔ 이자상당액(㉒ × ㉒ × ㉓)	

5. 납부할 세액

㉕ 납부할 세액(㉑ + ㉔)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제8항에 따라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세무서장 귀하

신 고 인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6. 재차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상속세
(5. 납부할 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

세무서장 귀하

신 고 인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재산명세"와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재산명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 상속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한 상속재산을 적습니다.
2. "㉔ 추정사유 유형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정사유 유형	코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	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	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	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3항제4호에 해당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3항제5호에 해당	05

3. "㉔ 가업상속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를 적습니다.
4. "㉔ 일수"란에는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5. "㉔ 이자율"란에는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적습니다.
6. "6. 재차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상속세"는 아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 나.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